사안 처리 사례 나눔 |

성고충 심의의 실제 및 2차 피해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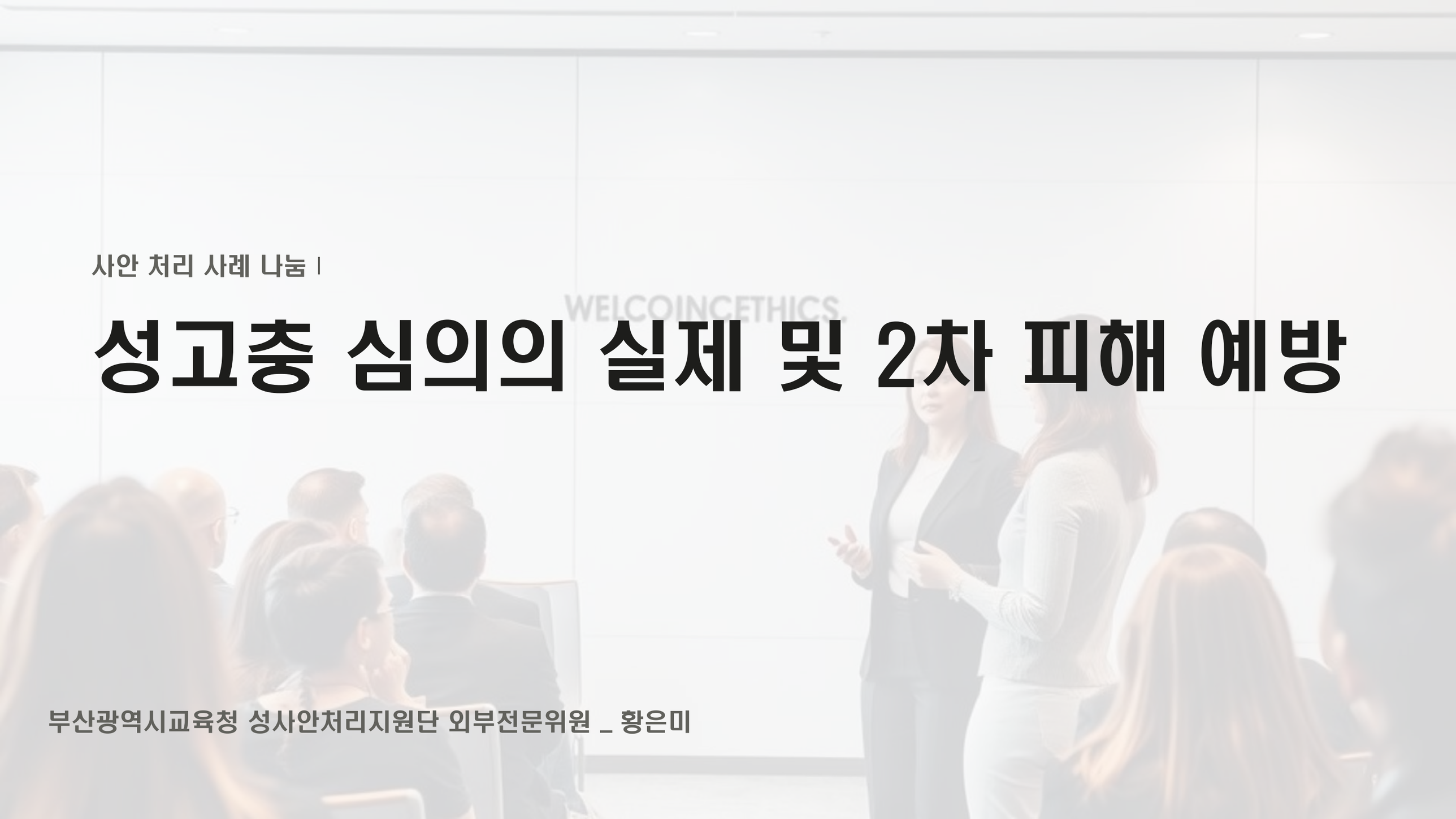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사안처리지원단 외부전문위원 _ 황은미

강사 소개

자격 및 교육

- 2012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 2014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

경력

- 2016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직 (~2022년, 5년9월)
- 2023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성 사안처리지원단 외부전문위원
- 2024년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문 노무사

강의 및 연수

- 2023년 학교장 성인식함양 워크숍 (1~5기)
- 2023년 고위직 맞춤형 별도 성인식 함양 연수
- 2024년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1기

CONTENTS

1 성희롱·성폭력 사안 이해하기

2 성고충 심의 이해하기

3 2차 피해 예방하기

4 사례 나눔 / 자주 묻는 질문

5 최종 확인

1. 성희롱 · 성폭력 사안 이해하기

5년 동안 교육부가 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에 신중함(?)을 기하는 동안, 사건은 반복됐다. 2018년 스쿨미투가 시작된 서울 용화여고에서는 2020년과 2022년에도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2020년에는 과거에도 가해자로 지목됐던 교사가 또 다시 성희롱 사건을 일으켰고, 2022년에는 훨씬 더 무거운 수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명지고는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및 수사의 허점이 학부모의 손편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가해교사 12명 중 3명만, 그것도 '주의' 수준의 가벼운 징계만 받고, 나머지는 징계나 수사를 받지 않았다. 퇴직한 4명의 퇴직 사유는 징계가 아니라 '정년퇴임'이었다.

교육부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매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건수와 사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감시하고, 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2023년의 학교는 2018년의 학교보다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곳이 되지 않았을까**.

> "스쿨미투 고발자들에게 어떤 말보다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죠."(광남중 스쿨미투 제보자 박민지, 가명, 2023. 3. 26. 인터뷰)

주요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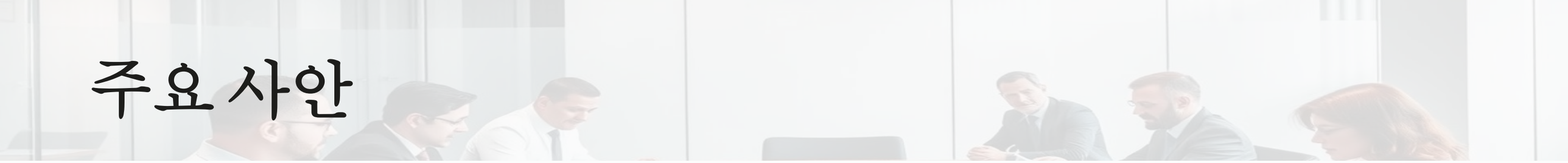

1

전통적인 성 사안

- 회식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성추행), 성적 질문
- 음란물 게시 등 시각적 성희롱

2

디지털 성범죄

- 불법 촬영
- 딥페이크 음란물

3

인식 차이

- 성역할 고정관념
- 상황에 대한 이해 차이

성고충 사안의 시작은?

“의심”시에도 시작
(특히, 아동학대)

신고·조사

성적 언동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함

-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
-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로 판단
  (합리적 피해자 관점, 성인지 감수성)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 성고충 심의 이해하기

사안처리 흐름도

1단계 신고 및 접수

1) 인지 및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4) 여성가족부 발생 통보
5) 분리 및 초기대응

2단계 사실확인

1) 사실확인
2) 사실확인 결과 보고

3단계 심의 및 조치결정

1) 대상별 위원회 개최 및 심의
2) 조치결정
3) 심의 및 조치결정 통보

4단계 조치이행

1) 조치이행
2) 조치불복

5단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출

1) 재발방지대책 수립
2) 재발방지대책 여성가족부에 제출

위원회 선정

피해 \ 가해	학생	교원	직원
학생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원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피, 가해교원)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직원, 피해교원)
직원	선도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 관련자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가능(교육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4)

위원회 선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학교 성희롱예방지침	교원지위법
성격	법정기구	자치기구	법정기구
처리사안	학교폭력사안	교직원 관련 성사안	교원관련 사안, 가해학생 조치

1단계_신고 및 접수

1

피해사실 유출 및 2차 피해 방지

피해사실이 유출되거나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행위자에게 통보

행위자에게 '신고가 접수되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됨**'을 알림

3

학교 구성원 대응

학교 구성원들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치

2단계_사실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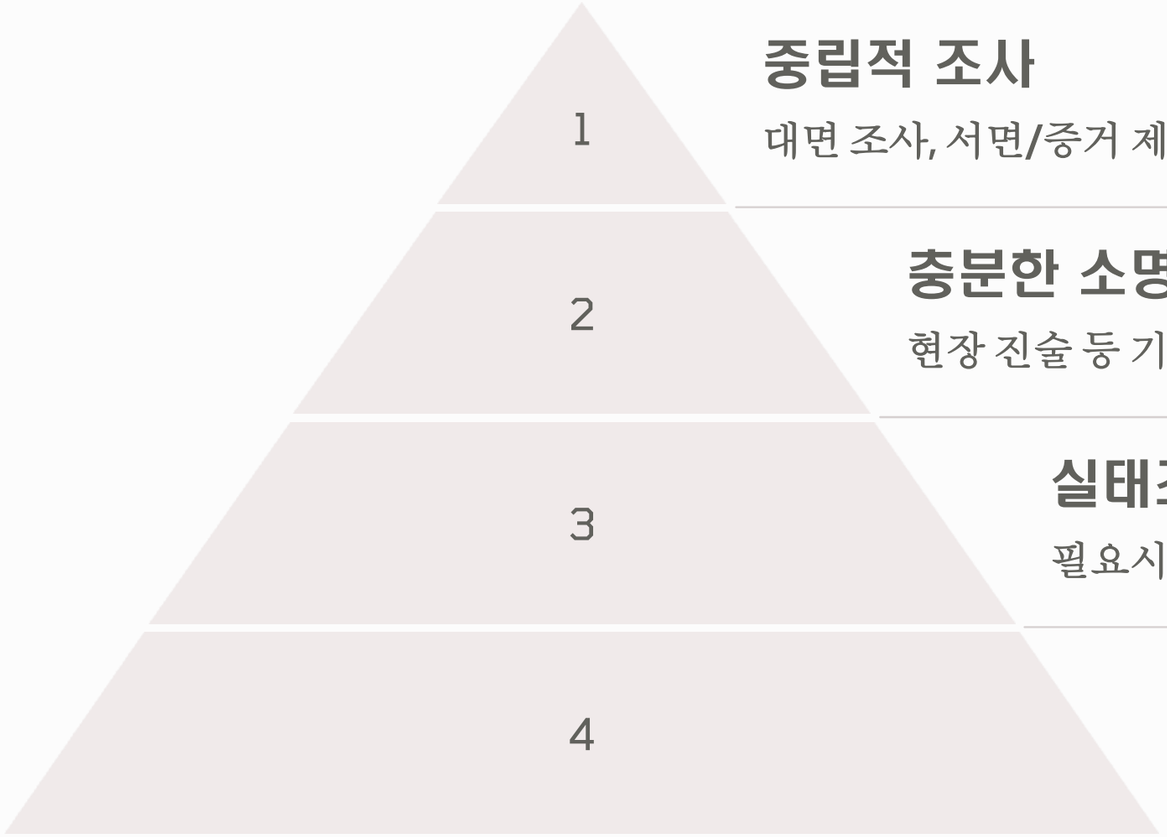

중립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면 조사, 서면/증거 제출,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하여 현장 진술 등 기회 보장 (개인이 확보하는 확인서, 녹취 등은 2차 피해의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완료 하도록 노력 (10일 연장 가능)하고, 사실확인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심의위 개최

3단계_심의

1 문서 제공

외부위원들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사실확인 단계에서 접수한 문서를 최대한 전부 제공하도록 노력

2 심의 진행

-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되, 위원의 기피·회피는 심의 당일에 이루어짐을 유의 (비공개 회의)
- ①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② 피해자 보호, ③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④ 2차 피해 방지에 관해 자문

3 간사의 역할

조사 과정 전반에 참여한 간사의 역할이 중요함 (피·가해자 동선 및 대기실 분리 운영 등)

4단계_조치 결정 및 이행

1	**심의결과 보고** 조속히 보고 노력
2	**후속절차 고려** 특히 필요한 경우
3	**불복 가능성 유의** 다른 위원회/법률 경우

심의결과를 조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 (특히 후속절차가 있는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의 경우 별도로 불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유의 (가이드 참조)

5단계_후속조치

1

후속조치 이행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원만히 이행되고, 향후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2

장기적 관리 (재발방지대책 제출)

특히 상당기간 지난 후이므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3

2차 피해 예방

이 단계에서도 소문, 비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성고충 심의의 목적

-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은 양 당사자 간의 **1회적 '사건의 처리'**가 아니라 **조직규범과 문화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조사가 시작된 경우 이미 피해자는 그동안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업무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위자 및 그 동자 등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안정, 회복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이 필요함 (2차 피해로 확산되기도 함)

- **비밀 유지 의무**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며, 특히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2차 피해 예방하기

2차 피해

- 성 사안이 발생한 이후 사건처리 과정 및 사건 종결 후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
- 남녀고용평등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서 2차 피해 규정
- 피해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소문을 방치하는 것은 모두 2차 피해에 해당

2차 피해 방지

- 학교는 사안을 처리하는 동안 교내에 더 이상 소문이 유포되지 않고,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자와 행위자 이외 목격자 등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사안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강조
- 조직내 구성원들에게도 소문을 유포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2차 가해이자 별도의 건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무고죄?

- 성희롱 미인정 또는 증거불충분 무혐의이면 무고죄가 아니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명예훼손죄?

-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는 공연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성이 있고, 고의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끼쳐 그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음

사안 처리 원칙

- 성 사안 규율의 목적은 **피해자가 그 조직 내에서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권리(인격권, 노동권, 학습권)를 보장하고 조직규범 및 문화의 확립과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조함
- 사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건을 공론화할 수도 있음. **('성희롱 사안이 발생하였고, 적법한 절차와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인을 특정하는 발언을 삼가고, 모두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4. 사례 나눔

피신고인이 자주 하는 말

- 잘 지내다가 사이 나빠지니 신고했어요
- 싫었으면 그 때 말했어야지
- 분위기 좋았는데 혼자만 불쾌했어요
- 신고자 말만 듣고? 증거가 없어요
- 성희롱 의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례 나눔

단 1명의 민원

교육활동 중 신체접촉, 장난

증거 수집

가해자이자 피해자

사례 나눔

명백한 범죄

학교의 선입견

증거 없이 다수의 신고만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례 나눔

계약제교원 퇴직

분리 조치 기간

전수 조사는 일만 커지는 것?

불인정 피해보상?

5. 최종 확인

최종 확인 (OX)

- 성 사안은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걸면 걸리는 거다? (X)
- 행위자가 피해자를 성희롱 행위자로 재신고할 수 있다? (O)
- 성 사안 해결 목표는 '성 사안 여부 확정 및 그 조치'이다? (X)
-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사안이 발생한 때부터 노력해야 한다? (O)
-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의 열람이나 조사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 알려줄 수 있다? (X)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문을 방치하면 안 된다? (O)

감사합니다